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경기도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시행 지침

자율 균형 미래

2024. 5.

경 기 도 교 육 청

(교육과정정책과)

목 차

1. 목적 ····· 1

2. 관련 근거 ····· 1

3. 기본 방침 ····· 1

4. 용어의 정의 ····· 2

5.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 ····· 3

6.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및 방법 ····· 6

7.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 7

8.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절차 ····· 9

9.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 10

경기도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시행 지침(안)

1 목 적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2017.1.1.)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選定)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

2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및 제53조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2017.1.1.)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시행 지침(안)」(미래교육정책과-13838, 2019.8.26.)
- 「초중등학교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2022.12.22.)
- 「경기도교육청 조기졸업 등 지침(과학고 관련) 개정 관련 협의회 참석 요청」(융합교육정책과-7481, 2024.4.22.)
- 「과학고등학교 조기졸업 제도 개선 매뉴얼 안내」(교육부-3915, 2024.4.29.)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시행 지침 개정을 위한 협의회 운영 계획(안)」(교육과정정책과-8155,2024.5.2.)

3 기본 방침

-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 조기진급 등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 조기진급자 또는 조기졸업자의 개별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4 용어의 정의

가. 조기진급

○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1)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단, 적용학년은 학교여건과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한다.

2)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는 동일 학교급 내에서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나. 조기졸업

○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1) 초등학교 5학년에서 조기졸업 할 수 있으며 차상급 학교로 조기 입학할 수 있다.

2)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동일 학교급 내 2학년에서 조기졸업 할 수 있으며, 차상급 학교로 조기 입학할 수 있다.

다. 상급학교 조기입학

○ 각급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5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기준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초등학교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 중학교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단, 학업성취도가 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 영어 교과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단, 학업성취도가 산출되는 경우에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 영어 교과의 학업성취도가 모두 A인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터)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 고등학교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다음을 적용한다.

1.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포함), 과학 교과와 전문교과, 심화 과목의 총 단위 수 대비 학업성취도가 A인 과목의 단위 수 합이 80% 이상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각 교과목 학기별 성적의 원점수에 단위 수를 곱하여 합산한 점수가 해당학년 전체 학생의 5% 이내인 자. 단 과학고는 10% 이내인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 2024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다음을 적용한다.

1.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수학·영어·한국사·사회(역사/도덕 포함)·과학 교과(군)와 전문교과Ⅰ, 전문교과Ⅱ의 총 단위 수 대비 학업성취도가 A인 과목의 단위 수 합이 80% 이상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각 교과목 학기별 성적의 원점수에 단위 수를 곱하여 합산한 점수가 해당학년 전체 학생의 5% 이내인 자. 단 과학고는 10% 이내인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단위 수’는 ‘학점 수’에 해당 함.

○ 2025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다음을 적용한다.

1.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수학·영어·사회(역사/도덕 포함)·과학 교과(군)와 전문교과의 총 학점 수 대비 학업성취도가 A인 과목의 학점 수 합이 80% 이상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각 교과목 학기별 성적의 원점수에 학점 수를 곱하여 합산한 점수가 해당학년 전체 학생의 5% 이내인 자. 단 과학고는 15% 이내인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단 과학고는 145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6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및 방법

조기졸업 신청 ➡ 조기졸업대상자 선정 ➡ 조기졸업평가 ➡ 조기졸업

① **(대상자 신청)** 조기졸업을 원하는 학생·학부모는 학교에 신청(3~4월)

- ○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

② **(대상자 선정)**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에 따라 희망자 중 대상자를 선정

- ○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함
- ○ (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에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차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③ **(평가)** 대상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

- ○ 각급학교의 장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함.
- ○ 조기진급·졸업대상자가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인정
- ○ 평가 통과 후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학교에 원서 제출 가능

④ **(조기졸업)**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졸업 인정(2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및 방법에 관련된 **세부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해야 함.

7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각급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초등학교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 중학교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 영어 교과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 고등학교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학업 성취도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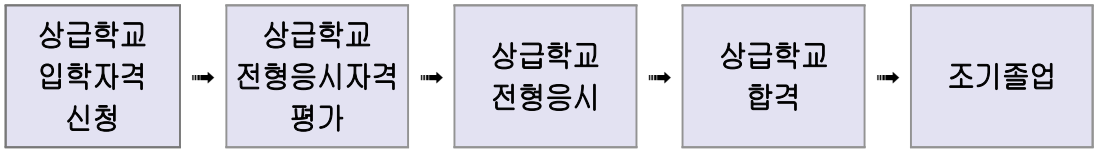
가.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포함), 과학 교과와 전문교과, 심화 과목의 총 단위 수 대비 학업성취도가 A인 과목의 단위 수 합이 80% 이상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각 교과목 학기별 성적의 원점수에 단위 수를 곱하여 합산한 점수가 해당학년 전체 학생의 5% 이내인 자. 단 과학고는 40% 이내인 자

나. 2024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수학·영어·한국사·사회(역사/도덕 포함)·과학 교과(군)와 전문교과Ⅰ, 전문교과Ⅱ의 총 단위 수 대비 학업성취도가 A인 과목의 단위 수 합이 80% 이상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각 교과목 학기별 성적의 원점수에 단위 수를 곱하여 합산한 점수가 해당학년 전체 학생의 5% 이내인 자. 단 과학고는 40% 이내인 자
※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단위 수'는 '학점 수'에 해당 함.

다. 2025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수학·영어·사회(역사/도덕 포함)·과학 교과(군)와 전문교과의 총 학점 수 대비 학업성취도가 A인 과목의 학점 수 합이 80% 이상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각 교과목 학기별 성적의 원점수에 학점 수를 곱하여 합산한 점수가 해당학년 전체 학생의 5% 이내인 자. 단 과학고는 30% 이내인 자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을 충족하거나 응시자격을 갖춘 자

8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절차



① **(상급학교 입학자격신청)** 상급학교 입학전형의 기준 및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수시)

※ 진학을 원하는 상급학교의 입학전형 일정에 따라 수시로 신청 가능

② **(상급학교전형응시자격평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 실시

○ 각급학교의 장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함.

③ **(상급학교전형응시)**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함

④ **(상급학교합격)**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함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해야 함.

9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는 조기진급 · 졸업 · 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가.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나. 위원회의 역할

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3) 기타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 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1)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2)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라.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2)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위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해야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